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 관련 처분면제 근거 신설 >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51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 관련 처분면제 근거 신설 등(안 제27조 제2항제2호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0.

다.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 관련 처분면제 근거 신설 등(안 제27조 제2항제2호 등)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의무를 추가하되,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u>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현행	개정안
②·③(생략)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 ④(생략)	2. 제2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④(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6호----- ② ~ ④(현행과 같음)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점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고 예방조치,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금지, 주류 판매·제공 금지,²⁾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제27조³⁾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보관’ 및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도 함께 금지하고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위법행위로 법 위반의 원인이 제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현행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두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⁴⁾

해당 규정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적극적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법 시행령을 통해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사유로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법령 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성실하게 영업하는 노래

4) 2022. 9. 27. 법률 개정, 2023. 3. 28. 시행

연습장업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류 반입 묵인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폭행·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98호)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